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7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회 사	KB증권
임직원	甲

2. 조치내용

가.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KB증권㈜ : 과태료 83백만원 부과* 및 과징금 부과 면제

- 조치사유 : 가.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
나.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

□ 직원에 대한 조치

○ 甲 : 과태료 18.5백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 다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

3. 조치이유

가.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(이하 '영업보고서')를 1년간 본점·지점·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

○ KB증권은 2021.2.15.~2025.2.14. 기간중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영업보고서를 5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연*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

*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47일, 최대 63일

나.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,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,

○ KB증권 A지점은 2021.7.1. ㈜채권 1건(2억원)을 판매하면서 해당 채무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다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,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, 매매명세를 분기별(월별)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,

○ KB증권 신림지점 甲*은 2006.3.15.~2023.8.23. 기간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(가족) 명의의 복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, 소속 회사에 총 63회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매매시점 기준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여,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필요

4. 근거법규

(조치사유 가.) 「자본시장법」 제33조 제2항, 제449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90조, <별표 22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 3>

(조치사유 나.)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9조 제2항, 제69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51조, <별표 4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 3>

(조치사유 다.)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 제1항, 제449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390조, <별표22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3>, <별표6>